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이사회 및 총회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총회 관련 그 구성과 절차에 대하여도 「규약」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그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면서 「규약」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선임 사항을 준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그중 ‘감사’의 경우 동조 제6항에 의거, ‘행정감사’와 ‘회계감사’의 각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 구성에 관하여는 「규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의원의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 총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과 소집에 관하여는 제8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임원과 대의원(대의원의 대리인 포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거나, 동조 제3항에 의거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의 대리인 참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규약」에 따라 ‘감사’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총회 구성 및 소집의 경우 또한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행정감사’ 선임 부적정

금번 협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협회는 감사 2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감사’의 경우 「규약」 제18조 제1항 4호에 따라 2명을 선임하였고, 동 2명은 제22조 제6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감사’ 1인과 ‘회계감사’ 1인으로 확인되어 그 구성은 적정하다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감사’의 경우 「규약」 제22조 제6항에 따라 ‘행정감사’ 1명과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감사의 자격에 대하여 동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중 ‘행정감사’의 경우 「규약」 제7조 제1항의 ‘대의원’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협회의 ‘행정감사’의 경우 「규약」 제7조 제1항의 대의원이 아닌 도내 일반부 선수단(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의 단장으로 확인되는 바,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사, 現 ‘행정감사’가 협회의 대의원이었고, 「규약」 제7조 제6항에 따라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협회의 대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現 대의원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부회장’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 이 또한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임원의 대의원 겸직 금지조항 미준수

협회는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시 당시 대의원이 7명 이상이 구성되지 않아 「규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협회 등록팀을 대상으로 「규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대의원 5명의 각 부별 등록팀의 대표자 4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본회 승인을 득하여 총회를 소집하였다. 2023년도 또한 정기대의원총회의 구성을 위하여 「규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대의원 6명의 4인의 등록팀 대표를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다.

[표1] '22~'23년도 정기총회 대의원 구성 현황1)

순	2022년 대의원총회			2023년 대의원총회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1	고양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윤00	고양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윤00
2	성남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나00	과천시아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김00
3	수원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조00	성남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나00
4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이00	수원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조00
5	안양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박00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홍00
6	리틀안양한라(초등부)	감 독	김00	안양시아이스하키협회	회 장	박00
7	분당중학교(중등부)	교 장	박00	성남블루이글스	감 독	오00
8	경희대학교(대학부)	총 장	한00	근명중학교	교 장	윤00
9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일반부)	단 장	양00	경희대학교	총 장	한00
10	-	-	-	HL 안양*	단 장	양00

*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

그중 일반부 등록팀의 경우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 단장(양00)을 대의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양00의 경우 20**년도 정기총회시 이미 임원(행정감사)으로 선임된 자로, 「규약」 제7조 제8항에 따라 대의원(대의원의 대리인 포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승인을 득하였다.

1) [출처] 2022년 : 본회 종목지역파트-830(2022.02.15.)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승인」
2023년 : 본회 종목육성팀-301(2023.02.15.) 「2023년도 종목 대의원총회 대의원 승인(아이스하키)」

또한, 現 행정감사인 양00은 2023년도 정기총회시 「규약」 제25조에서 정한 감사의 임기인 2년이 경과하자 23년도 정기총회시 연임이 의결된 자료, 21년도 선임후 감사보고서 작성 등 현재까지 그 활동이 지속되어 지고 있어, 향후 동 인물의 활동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자격 없는 자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협회는 그 직위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 총회 구성 규정 미준수

협회는 2022년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시군아이스하키협회 가입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2022. 12. 15 경기종합노동복지관 개최)

당시 임시총회 참석 및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규약」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이상 5개 시군협회의 장이었으며, 안양한라, 경희대학교, 분당중학교, 리틀안양한라의 경우 규약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수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임시로 구성된 대의원으로 판단된다.

「규약」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총회의 경우 본회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 4인을 포함한 총9명이 참석 대상이었고, 실제 7명이 참석하였으나 성남시의 경우 부회장(김00)이 대리인으로서 참석하였으며, 안양한라의 경우 프로(원00)가, 분당중의 경우 수석코치(이00)가 각각 대리인으로서 당일 참석하였고, 서명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규약」 제7조 제3항에는 ‘대리인’의 참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 총회 전일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협회에서 제출한 「20** 임시총회」 자료에 의하면 위임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희대학교 감독(신00)의 경우 해당 대학의 총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이나, ‘위임장’이 확인 되지 않는다.

협회는 위의 사정에 따라 ‘임시총회’라 하더라도 「규약」 제7조 제4항의 사유발생시 총회의 소집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협회는 해당 총회 소집시 대의원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였어야 하고, 대리인 참석에 관하여는 「규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의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소집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어, 총회 소집에 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은

가. ‘행정감사’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며 「규약」 제7조 제8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임원과 대의원(대의원의 대리인 포함)의 중복선임이 되지 않도록 現 임원과 대의원의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또한 향후 ‘총회’ 소집시 대의원 구성 및 그 대리인의 참석 등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약」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규약 개정절차 미준수

[소 속 기 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른 내용 변경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하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6조(권리와 의무) 및 제53조(규정 제·개정)에 따르면 협회는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²⁾ 및 제53조³⁾, 「규약」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 2)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3조(규약 등 제·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2022년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2022. 2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22.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동 「규약」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후 협회는 본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2022. 4월 본회에 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요청⁴⁾하였고, 이후 2022. 5월 본회의 승인⁵⁾을 득하였다.

협회 「규약」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협회는 「규약」 개정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번 「2024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이사회 및 총회)에 따르면 당시 협회의 「규약」개정시 이사회와 총회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득한 것은 확인되나,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에 그 심의절차가 불가한 사항이었다 하더라도 협회는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 후 그 심의를 거치는 것이 「규약」개정에 있어 다소 늦어지는 사유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하자를 방지하는데 있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4)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2022-40(2022.4.6.) 「규약 개정 승인요청」

5)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2036(2022.5.3.)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규약 개정(안) 승인 통보」

변경前 규약변경 관련 조항⁶⁾을 적용하더라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의무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20**년 개정된 「규약」변경사항의 경우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조속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회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시어 재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절차 진행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본회 공정감 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변경 前) 「규약」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아이스하키협회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함)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련번호: 3]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약 제4조의 각종사업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그 구성 등에 대하여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37조 부터 제39조의2 조항을 두어 각종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규약」 제37조 제6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 기관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에 비추어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로 「규약」 제38조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8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2의 조항을 두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규약」을 포함한 각종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그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각종 위원회 미구성

협회의 경우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약」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사업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를 통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규약」 제38조를 통해 별도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 정한 기능에 비추어 협회 운영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매년(수감범위 ‘21~’23년도)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만 이사회,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제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년 **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심판위원회’의 설치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나,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협회간 심판배정에 관한 사항 등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사유로 현재까지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조속한 위원 구성을 통해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라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 각종 위원회 규정의 미제정

「규약」 제39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9조 제3항⁷⁾에서도 도종목단체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위원회 설치시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규약」 제38조 제4항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 제4항⁸⁾ 또한 동일내용을 규정하여 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20**년 제**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심판위원회의 설치를 심의 의결하였으나, 그 운영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 또한 현재(2024 정기종합감사기간 기준)까지 의결한 바 없다. ‘스포츠공정위원회’ 또한 매년(수감범위 ‘21~’23년도) 그 설치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기타사항’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정 또한 제정한 바 없다.

7)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도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8)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 등을 준용하시어 각종 위원회 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협회의 각종 규정 관리 및 징계, 포상 등에 관련된 필수적인 위원회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제정, 위원회 구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사업별 지침 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경기도 회계관리 규칙”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회계처리가 신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제15조(계약의 체결) 제3항⁹⁾에 의거,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9)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 제40의 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 1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2021년 및 2023년 *****’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표1]와 같이 용품 구매 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금액을 분할 하여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회 관계자는 계좌이체 및 카드이체 한도가 낮은 관계로 불가피한 분할 지출이라고 진술하였다.

[표1] 2021, 2023 *** 분할지출 및 계약서 미작성**

년도	사업명	금액(원)	지출내역	업체명
2023	*****	*, ***, 000	대학부 스틱	나*****
		*, ***, 000	초등부 스틱	플*****
		*, ***, 000	중등부 스틱	플*****
		*, ***, 000	일반부 스틱	플*****
		*, ***, 000	떡	플*****
2021		** , ***, 000	물품(장비) 구입	플*****

또한 ‘2023 *****모’ 사업을 수행하면서 [표2]와 같이 음향, 전광판 등 대관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비용을 추가 지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회 관계자는 동 지출건에 대하여 실제 전광판, 음향에 대한 대여 비용이 아닌 관련 장비를 조작 또는 고장발생시 수리를 위한 업체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지출이었음을 진술하였다.

[표2] 2023 *** 추가 지출**

년도	사업명	금액(원)	지출내역	업체명
2023	*****	*, ***, 000	전광판	유*****
		*, ***, 000	음향	큐*****

그리고 ‘20** *****’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전 예산 편성 항목(대관료) 외 일부 금액을 운영비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20** *****’ 사업 시 경기장 임차계약을 하지 않았다.[표3]

[표3] 예산편성 항목 외 지출 현황

년도	사 업 명	금액(원)	지출내역	업체명
2023	*****	*,***,000	대관료	고*****
2022	*****	** ,000	음료	스*****

[조 치 사 항]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은

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청렴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및 회계처리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21~23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지출증빙 전면 재검토을 통해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 후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더불어, 분할구매 또는 지출에 대한 회계관련 부적정 지출 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체 및 카드결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전자문서시스템 미사용

[소 속 기 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¹⁰⁾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예산지원도 함께 진행하여 협회의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내·외부 문서의 관리를 ‘문서24’를 통해 관리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국도비 및 자체비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기록화 하고 있었다.

‘문서24’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문서의 목록과 내부결재의 내용만 확인이 가능해지며, 각종 첨부자료 등이 자동 삭제되어 이전 사업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불가능해짐에 따라 제대로 된 전자적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국도비 및 자체비는 PC와 서면을 통해 보관하고 있으나 분실 및 훼손, 저장장치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전자적 기록화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동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장은

협회의 사무국이 경기도체육회관에 입주해있는 만큼 본회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2024년 하반기(8월)부터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록물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기타규정 제정 필요

[소 속 기 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르면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사무국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표1]과 같이 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어 인사 및 복무, 회계처리 등 체계적으로 운영을 위해 기타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표1]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기타규정(규약) 및 기타규정 현황

기관명	규정명	제개정일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규약	20**.**.*. 개정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 규정	20**.**.*. 개정
	팀등록규정	20**.**.*. 개정

[조 치 사 항]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장은

「규약」,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기타규정」 등을 준용하여 회계규정, 인사 및 복무 규정 등을 종목 특성 및 여건에 맞춰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협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된 기타규정을 본회 공정감사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회계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재산 및 회계 관련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항은 회계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¹⁾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부여와 그 위반하는 회계 관계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4. “생략”

또한,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 제11조²⁾는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과 동일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현재 회계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한 구분 및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회계재정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사항]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장은

체육회 「회계규정」을 준용하는 등 협회 운영과 관련한 회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에 따른 회계담당의 범위를 구분·지정하시고,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필히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체육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